

## 근로장학생 운영 규정

(제정 2009. 3. 5.)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이 교내 및 교외 시설 등에 배치되어 근무할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의 대가를 통하여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근로 장학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본 규정의 “근로장학생”이라 함은 “교내근로장학생” 및 “국가근로장학생”을 말한다.

**제3조(신청자격)** 본교 재학생 중 가계곤란자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자, 가계곤란자 등)를 대상으로 한다.

**제4조(신청기간 및 제출서류)** ① 근로 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매 학기말 4주전에 학생지원실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근로 활동을 신청한 자는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근로장학생 신청서 및 졸업 후 취업 등 경제활동조사에 대한 동의서
2. 가계곤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증명서, 의료보험증 사본, 의료보험납입영수증

**제5조(근로장학생 선정 기준)** 대학에 재학 중인 정규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한다.

1. 기초생활수급자
2. 차상위계층
3. 가족의 연간 소득이 “세대당 평균소득”에 미달하는 자
4. 가족의 연간 소득이 “세대당 평균소득”이상인 자 중 경제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

**제6조(근로 장소)** 근로장학생으로 선정된 자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근무 한다.

1. 교내근로장학생 : 각 행정부서 등
2. 국가근로장학생
  - 가. 전공시설 : 산업체(창업보육센터 등 교내 입주업체, 학교기업), 공공기관(공기업 포함), 연구소, 시험·측정기관, 실험·실습시설, 도서관 등 교내·외 시설
  - 나. 비전공시설 : 장애인, 아동복지, 노인복지 등 사회복지시설, 저소득층 학생 지원 시설

**제7조(근로시간)** ① 교내근로장학생의 근무시간은 학기중에는 본인의 수업시간표에 의해 휴강하는 시간(본인 및 행정부서 협의), 방학중에는 08:40 - 16:00까지 한다.

② 국가근로장학생은 학기중 본인의 수업시간표에 의해 주당 20시간 이내, 방학중에는 주당 40시간 이내로 한다.

**제8조(장학금액)** ① 교내 근로장학금액은 당해년도 장학위원회 결정 금액을 지급한다.

② 국가 근로장학금액은 매학기 교육부장관이 결정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.

근로장학생 운영 규정 3-4-13-2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정은 2013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. 제 8조의 교육부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은 201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.